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때 고려사항을 명시함.
- 나.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5)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규모 및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 사항 등 투자 감경의 고려 사항 및 감경 상한, 법에 따른 투자 감경의 제외 대상을 명시함.

다.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6항)

-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라. 부과 과징금 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및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 외에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1. ~ 7. 13.)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64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의2제2항”을 “법 제64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64조의2제6항”을 “법 제64조의2제8항”으로 한다.

⑤ 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투입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규모 및 지속성
2.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⑥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64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64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의5 중 “법 제64조의2제9항”을 “법 제64조의2제11항”으로 한다.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5] 투자 감경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64조의2제1항·제2항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제2항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4조의2제3항-----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⑤ 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는 별표 1의5와 같다.

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투
입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
의 투자 규모 및 지속성

2.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
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
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⑥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
다.

⑦ 법 제64조의2제8항-----

-----.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u>법 제64조의2제1항</u>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호위원회는 <u>법 제64조의2제1항</u>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u>법 제64조의2제9항</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 --- <u>법 제64조의2제1항·제2항</u>----- ----- ----- ----- ----- -----. ② ----- <u>법 제64조의2제1항·제2항</u>-----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u>법 제64조의2제11항</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연 락 처	(02) 2100 - 3161